



교육과학기술부

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

(경유)

제목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실효
알림

1. 관련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(2012. 4. 20 공포·시행)

학교문화과-1976(2012. 5. 4)

2. 귀 자치단체에서 공포하고, 우리부에서 “조례무효확인소송”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“학생인권조례”의 일부조항이 상위법령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) 개정에 따라 실효되었음을 통보하오니, 관할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귀 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, 귀 직이 지난 2012년 1월 27일 한 “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”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지난 2012년 2월 15일 정치처분(근거 :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)한 바 있습니다. 동 정치처분에 대해 귀 직은 대법원에 “정치처분 취소소송”을 제기한 상태이고, 결과적으로 현재 귀 직의 “학칙 개정지시 처분”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.

4. 따라서, 서울시교육청 관할 각급학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?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오니, 일선 학교에 이와 모순되는 지시를 내려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.

※(1/27) 서울시교육청, 학칙개정지시 → (1/30) 교과부, 시정명령 → (2/15) 교과부, 학칙개정지시 정치처분 → (2/29) 서울시교육청, 대법원에 “정치처분 취소소송” 청구

붙임 :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실효조항 안내 1부. 끝.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권조례 실효조항

□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

- (추진배경) 학교규칙이 학생·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으로 제정·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한 현실 개선
- (추진경과) 입법예고(2.21~3.2) ⇒ 국무회의 상정 ⇒ 공포·시행(4.20)

□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

- 학칙 기재사항으로 “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”을 구체적으로 명시
- 학칙 중 학생생활 관련 사항을 제·개정 할 때에는 미리 학생·학부모·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

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

행정사무관

학교문화과장

교육복지국장

협조자

시행 학교문화과-1981 (2012-05-04) 접수 책임교육과-11117 (2012.05.07.)
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과학기술부 / minho123@mest.go.kr
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
전화 02-2100-6643 전송 02-2100-6438 / minho123@mest.go.kr / 공개
행복지킴이! 안전한국 훈련!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7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<u>지도 방법</u>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</p>	<p>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-----<u>지도 방법</u>, <u>두발·복장 등 용모</u>, <u>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</u>, <u>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</u> ----- -----.</p>

□ 시행령 개정의 취지 및 효과

- (취지) 학생의 두발·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별로 정하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
- (효과) “학생인권조례” 중, 학칙으로도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실효 (상위법령 위반)

□ 참고 : 서울-경기-광주 학생인권조례 실효 조항

구분	서울 (2012. 1. 26 공포·시행) - 조례무효확인소송 중	경기 (2010.10.5 공포·시행)	광주 (2011.10.28. 공포 / 2012. 1. 1. 시행)
두발 복장 등 용모	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.</p>	<p>제14조(표현의 자유) ② 학생은 두발,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p>
	<p>▶ 두발 : 원칙상 자유</p> <p>▶ 복장 : 원칙상 자유 + 학칙으로 제한</p>	<p>▶ 두발 : 길이 규제 금지</p> <p>▶ 복장 : 원칙상 자유</p>	<p>▶ 두발 : 원칙상 자유</p> <p>▶ 복장 : 원칙상 자유 + 교복은 학칙으로 제한</p>

구분	서울 (2012. 1. 26 공포·시행) - 조례무효확인소송 중	경기 (2010.10.5 공포·시행)	광주 (2011.10.28. 공포 / 2012. 1. 1. 시행)
실효 ⇒ (시행령)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가능			
소지품 검사	<p>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② 교직원 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 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 니 된다.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 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,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 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2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 지·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.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 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 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 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 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2조(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 호 받을 권리) ⑤ 교직원은 학생 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 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불가 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 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 도에 그쳐야 한다.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/ 압수 금지 ▶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, 일 괄검사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/압수 금지 ▶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/압수 금지 ▶ 필요시 최소 범위로 한정
실효 ⇒ (시행령)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			
휴대 전화 등 전자 기기	<p>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<u>소지 및 사용</u> <u>자체를</u>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 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 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 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 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를 규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사생활의 자유)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 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 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 호 받을 권리)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 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 조제3항*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 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.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지 : 소지자체는 금지 불가 + 학칙으로 규제 ▶ 사용 : <u>사용자체는 금지 불가</u> + 학칙으로 규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지 : 소지자체 금지 불가 + 학칙으로 규제 ▶ 사용 : <u>학칙으로 규제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지 : 소지자체는 금지 불가 ▶ <u>사용 : 학칙으로 규제 가능</u>
실효 ⇒ (시행령) 휴대전화 등			
효력유지 (시행령 위반 없음)		효력유지 (시행령 위반 없음)	

구분	서울 (2012. 1. 26 공포·시행) - 조례무효확인소송 중	경기 (2010.10.5 공포·시행)	광주 (2011.10.28. 공포 / 2012. 1. 1. 시행)
	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		